

이달의 초점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및 극복 방안

공공부조의 '신청주의' 개념과 시사점: 법률, 제도, 언론 분석을 중심으로

| 임덕영 |

주요 복지국가의 신청주의 개념 및 적용

| 김기태·임덕영·이다미 |

프랑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사례: 원천연대를 중심으로

| 정은희 |

탈신청주의의 네 가지 모형 검토

| 김기태·오성재·최준영 |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 이다미 |

탈신청주의를 위한 데이터 측면에서의 검토 사항

| 이주미 |

복지급여 자동화에 이르는 몇 가지 경로

| 노대명 |





탈신청주의의 네 가지 모형 검토¹⁾

Beyond the Application-Based Approach: Four Models of Automated Welfare Provision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오성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복지급여 탈신청주의 관련 논의에서 ‘신청주의 대 자동지급’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선 논의가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탈신청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전 국민과 복지멤버십 가입자로 나누고, 급여 지급 방식을 자동 안내와 자동 지급으로 구분해 2×2의 네 가지 모형으로 나누었다. 네 가지 모형은 ① 복지멤버십 대상 자동 안내, ② 복지멤버십 대상 자동 지급, ③ 전 국민 자동 안내, ④ 전 국민 자동 지급이었다. 현행 모형에 가까운 ① 복지멤버십 대상 자동 안내에서 가장 전향적인 ④ 전 국민 자동 지급 모형으로 진행할수록 사각지대 해소와 낙인효과 제거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오류 지급 시 환수 문제 등의 쟁점을 동반한다. 보편적 성격의 급여나 가치재 성격의 급여는 자동 지급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나, 공공부조와 같이 엄격한 자산 조사가 필요한 선별적 제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 복지급여 탈신청주의 논의의 배경

보편주의 확대, 개인정보의 방대한 누적 및 디지털 기술 적용에 따라 전통적인 신청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노대명,

2025; 남찬섭, 2025).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탈신청주의의 핵심은 신청주의 극복 과정에서 잠재적인 수급자의 침해되는 사익과 보장되는 공익 사이에서 법익의 균형(양승엽, 2025)이다. 즉 탈신청주의 자체보다 신청 과정에서의 인간 존중의 원칙, 사회권

1) 이 글은 김기태, 강신욱, 김태완, 노대명, 이현주, 함영진, 김성아, 이원진, 임덕영, 임완섭, 정은희, 오성재, 이다미, 이주미, 최준영. (2025).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4장 제2절을 정리한 것이다.

보장,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은 소득보장 제도 가운데서도 공공부조 제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동 지급에 이르는 네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모형별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분석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할 점이 있다. 복지급여 자동 지급의 방향이 현재의 법 내용과는 모순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는 사회보장급여가 국민이 받을 권리임을 확인하면서 제11조 1항에서 권리 행사의 개시에 신청주의 원칙을 명기하고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서 보장 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염두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이하 급여) 지급상의 기존 원칙인 신청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현행법과의 긴장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이행 형태를 대상과 급여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네 가지 모형으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모형이 적용될 때 예상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겠다.

2 탈신청주의의 네 가지 모형

탈신청주의라는 용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현행 신청주의 원칙에서 전 국민 대상 급여의 완전 자동 지급이라는 급진적이고 이분법적인 변화의 모습을 떠올린다.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임이 분명하지만, 후자의 급진적인 변화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동반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전 국민 대상 자동 지급’을 탈신청주의가 극대화된 모습으로 규정하고, 중간 지점을 제시하면서 점진적인 경로를 밟는 접근 역시 검토할 수 있다.

먼저, 탈신청주의를 소득보장 분야의 현행 제도 각각에 적용할 경우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관심대상 소득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사회수당, 세금환급형 소득지원, 공공부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보험은 은퇴, 실업, 산재 등에 대응하는 소득보전 정책이므로 가입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자동 지급으로 이행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가 적다. 개인의 누적된 기여에 따른 수급이므로 신청에 따른 자격 심사 과정이 복잡할 이유도 적다. 둘째, 사회수당도 마찬가지이다. 인구학적 요건만 충족되면 자동 지급이 신청주의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간명하다. 셋째, 세금환급형 소득지원은 신청주의 원칙을 넘기가 쉽지는 않다. 이를테면 소득세 신고는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근로장려금에서도 급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하면 2년 동안은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국세청, n.d.). 넷째, 탈신청주의로의 이행은 공공부조 영역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노출할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정책 수요가 많지만, 소득, 재산, 건강, 가족 정보를 모두 활용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논란의 여지도 크다. 탈신청주의의 제도별 경로를 그린다면 사회수당, 사회보험, 세금환급형 소득지원, 공공부조 등의 순서로 점진적인 접근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이 글에서는 신청주의 극복에서 가장 큰 난제로 생각되는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제도적 측면 이외에 단계적 접근에서 고려할 사항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다. 탈신청주의와 관련하여 핵심 쟁점은 신청이라는 ‘당사자 동의’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상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편의만을 제공하는 제도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칫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이 대목에서 복지멤버십에서의 맞춤형 급여 안내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보건복지부, 2025. 1. 2.). 2025년 1월 기준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해 있다.²⁾ 전 국민의 20%에 달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복지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 근거가 되는 개

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집단이다. 따라서 복지멤버십 제도는 탈신청주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기존 복지멤버십을 고려하여 탈신청주의의 형태를 적용 대상의 범위와 자동화의 수준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현행 복지멤버십 가입자, 전 국민으로 나누고, 급여 지급 방식을 자동 안내, 자동 지급으로 나누면 2×2의 네 가지 모형으로 [그림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네 가지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① ‘복지멤버십 대상자 자동 안내’는 현행 모형에 해당하는데, 앞으로 대상자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즉 복지멤버십 대상자에 한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급여에 대해서 자동 알림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② ‘복지멤버십 대상자 자동 지급’은 현행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안내에 그치지 않고 복지급여를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 번의 가입과 정보 제공 동의로 생애주기별로 급여가 자동 지급이 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③ ‘전 국민 자동 안내’는 전 국민 ‘당연적용’ 복지멤버십을 의미한다. 의무 가입을 전제로 자동 안내 이후 신청자에 한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④ ‘전 국민 자동 지급’은 의무 가입을 전제로 급여 자격 여부에 부합하면 급여를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다. 물론 ③, ④ 모델에서 개인정보 제공 거부(opt-out) 혹은 수급

2) 동시 신청 제도도 있는데, 이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거부의 권리 부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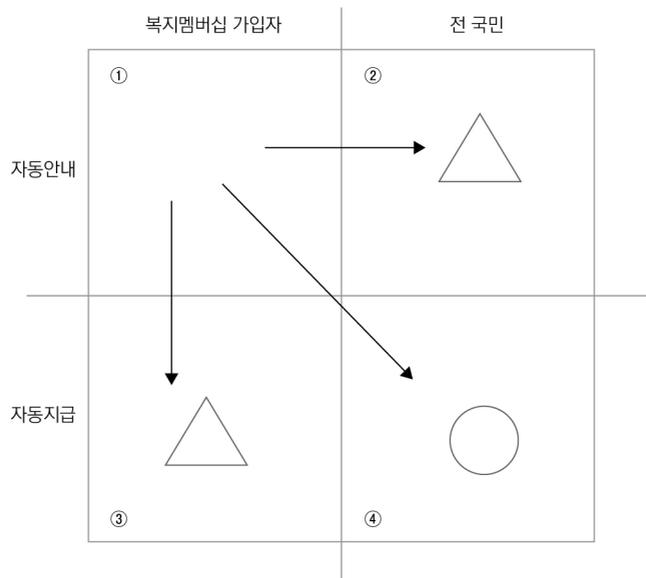
이렇게 살펴보면 탈신청주의의 경로를 ① 현행 모형 vs ④ 전 국민 자동 지급으로만 단순화할 필요는 없다. 미래의 지향이 ①~④ 선택지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고, 모형들의 장점을 조합하거나 다른 요소를 결합한 제5의 유형이 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①에서 ④로 이동하는 경로 속에서 ②~③의 선택지를 단계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핵심은 ①~④ 모형의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단계별 이행에 따른 준비 내용을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3 탈신청주의의 네 가지 모형 비교 분석

탈신청주의의 네 가지 모형별로 예상되는 효과를 <표 1>로 정리할 수 있다. 탈신청주의와 관련된 의제들을 필자들과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0가지 기준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앞서 구분한 네 가지 모형이 각각의 기준 아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열 가지 기준 가운데 ①~⑤는 급여를 자동 지급으로 이행할 경우를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효과들이다. ① 사각지대 해소, ② 행정비용 경감, ③ 낙인효과 경감, ④ 수급자 접근성 확대, ⑤ 현장 공무원 편의 증대다. <표 1>에서 '○ 긍정

[그림 1] 탈신청주의 네가지 모형



출처: 연구진 작성.

적 효과, △ 부분적 효과, × 효과 없음, ○× 효과 혼재' 평가는 자동 알림도 없는 엄격한 신청주의 모형과 비교해 이뤄졌다.

나머지 다섯 가지(⑥~⑩)는 지향하는 방향이 반대다. 즉 신청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기준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다. ⑥ 수급자 자기결정권 보호, ⑦ 프라이버시 보호, ⑧ 재정 부담 경감, ⑨ 전략적 미신청 유지, ⑩ 오류 지급 방지다. <표 1>에서 '○ 긍정적 효과, △ 부분적 효과, × 효과 없음, ○× 효과 혼재' 평가의 비교 대상은 전 국민 대상 자동 지급 모형이다.

이렇게 효과를 두 범주, 전 국민 자동 지급 이행 기준(①~⑤)과 신청주의 엄격 유지 기준(⑥~⑩)으로 나눈 이유는 전 국민 대상 자동 지급의 모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효과와 부작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테면 '④ 전 국민 자동 지급' 모형은 사각지대 해소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수급자의 자기결정권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부정적(×)이라고 제시할 수 있다.

참고로 '⑨ 전략적 미신청 유지(기초연금)'의 경우 직관적인 이해가 쉽지는 않아서 설명이 필요하다³⁾. 일부 급여에 대해 잠재적 수급자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를테면 공공부조 수급 대상으로 남기 위해 기초연금을 '의도적으로 미신청하는'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자동 지급되면 이들 가운데 다수가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상

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빈곤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는 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 현재 기초연금액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이와 같은 문제가 완화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이러한 전략적 미신청과 관련한 논점과 분석 결과는 아래에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논점들을 염두에 두고 네 가지 모형의 비교 분석을 아래와 같이 시도해 본다.

먼저 ①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는 ④ 전 국민 자동 지급의 효과가 가장 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① 현행 복지멤버십 대상자 자동 안내 모형도 일부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있다. ② 멤버십 대상 자동 지급을 시행할 경우, 멤버십 대상자 가운데 현재 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청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자동 지급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일부 기대될 수 있다. ③ 전 국민 자동 안내의 경우 홍보 효과로 인한 신규 수요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④ 전 국민 자동 지급의 경우 국가가 가진 정보에 오류가 없다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다.

② 복지행정 현장의 행정 비용 경감 측면에서는 ④ 전 국민 대상 자동 지급 모형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①모형에서 ④모형으로 이동할수록 행정 비용은 경감될 가능성이 크지만, 효과는 복합

3) 게임이론(game theory)에서 전략적 행위(strategic action)는 상대의 행위를 예측하여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선택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번 사례에서 미신청은 총소득의 변화를 예측한 수급자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행위이다.

적일 수 있다. 이를테면 ③ 전 국민 자동 안내의 경우 홍보로 인한 신규 수요 발굴에서 오는 행정 처리 비용 증가와 동시에 수급 절차 안내 등 정보격차 해소로 인한 행정 비용 감소 효과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③ 낙인효과 경감 효과는 ④ 전 국민 자동 지급 모형에서 뚜렷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과 ③의 자동 안내 모형에서는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인효과는 감소할 수 있지만, 급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인효과는 여전히 남는다. 물론 신청 과정을 얼마나 간소화하느냐에 따라 효과의 정도는 차이가 날 것이다.

④ 수급자 접근성 증대 측면에서 ④ 전 국민 자동 지급 모형은 신청주의에 내재된 네 가지 장벽(後藤

玲子, 2017)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後藤玲子(2017)에 따르면 잠재적인 수급자는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벽, 인지의 벽, 사회의 벽, 제도의 벽을 마주하게 된다. ② 멤버십 대상 자동 지급 경우는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수급 대상자의 존재로 인해 접근성 증대는 제한적이다. ①과 ③의 자동 안내 모형의 경우는 급여 신청 절차가 여전히 남아서 접근성 증가 효과는 부분적일 수 있다.

⑤ 현장 공무원 편의는 ④ 전 국민 자동 지급 모형에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② 행정 비용 경감과 유사한 이유로 현장 공무원 편의 증가 및 감소 효과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①과 ③의 자동 안내 모형의 경우 현장 공무원의 정보 제공 업무는 줄어들 수 있지만, 수급자 증가에 따른 수급 관

[표 1] 네 가지 탈신청주의 모형의 효과 비교

	복지멤버십 대상자		전 국민	
	① 자동 안내	② 자동 지급	③ 자동 안내	④ 자동 지급
① 사각지대 해소	△	△	△	○
② 행정 비용 경감	×	○	○×	○
③ 낙인효과 경감	△	△	△	○
④ 수급자 접근성 확대	△	△	△	○
⑤ 현장 공무원 편의 증대	○×	○	○×	○
⑥ 수급자 자기결정권 보호	○	×	○	×
⑦ 프라이버시 보호	○	○	×	×
⑧ 재정 부담 경감	○	△	△	×
⑨ 전략적 미신청 유지(기초연금)	○	×	○	×
⑩ 오류 지급 방지	○	△	○	×

주: ○ 긍정적 효과, △ 부분적 효과, × 효과 없음, ○× 효과 혼재, - 현행 수준 유지
출처: 연구진 작성.

련 업무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급여 대상을 확장하면서 급여 지급 방식을 자동 지급으로 개편했을 때 긍정적인 기대효과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부정적인 효과 다섯 가지를 점검해 본다.

⑥ 수급자 자기결정권 보호 측면에서는 ④ 전 국민 자동 지급 모형의 부작용이 가장 클 수 있다. 이를테면 이희옥(2021)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응하는 인간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고찰하면서 “자율화(autonomous)를 지향하는 인공지능의 본질적 위험은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간을 객체로 보아 인간의 자기결정을 위협”(p. 33)한다고 설명한다. 자동 지급이나 자동 안내가 반드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서 비롯되는 ‘자율화’ 혹은 ‘자동화’가 수급자의 수급 여부, 수급 내용과 형식에 대한 결정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여지가 크다. 정세정과 김기태(2022)는 한국인 가운데 ‘큰돈이 필요하거나’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을 대략 20% 수준으로 분석한 바 있다. ‘원하지 않는’ 자동 개입은 결국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자기결정 존중’과 ‘사회권 보장’ 원칙 사이의 충돌을 낳을 수 있다.

의무 가입을 전제로 하는 탈신청주의 모형은 ⑦ 프라이버시 보호와도 긴장 관계를 낳는다. 자동 안내 혹은 자동 지급을 위해서는 잠재적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가족 정보 등을 수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 사회권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일정 부분 훼손해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현행 복지멤버십 대상자의 경우 멤버십 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 취득 및 활용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다. 전 국민을 자동 안내 혹은 자동 지급 대상으로 상정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조건 혹은 강제성에 따른 논란이 따를 여지가 크다.

⑧ 재정 부담의 측면에서 보면 ④ 전 국민 자동 지급 모형에서 재정 지출 부담이 가장 클 것이다. 현행 ① 복지멤버십 대상 자동 안내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다. ② 복지멤버십 대상 자동 지급을 시행하게 되면 수급자 증가로 추가 재정 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다. ③ 전 국민 자동 안내의 경우 홍보 효과로 인한 신규 수요 발굴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 과정을 자동화할수록 재정 부담은 커지지만, 시민의 사회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⑨ 수급자의 전략적 미신청⁴⁾ 측면에서 보면 ④ 전 국민 자동 지급 모형에서는 수급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현재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종 급여에서 탈락하여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이 감소하는 개인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전략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윤주, 2023. 11. 1.). 사회보장 원리로 보면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총소득

4)

이 증가하게 되면 제도의 원칙에 따라 공공부조 급여액을 감액하거나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제도 변화에 따른 민원 발생의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참고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약 23만 6000명으로 추정된다(김윤주, 2023. 11. 1.).

⑩ 오류 지급의 여지는 자동 지급 모형인 ②와 ④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④모형에서 상대적으로 크다. ①과 ③의 자동 안내 모형에서는 잠재적인 수급 대상자의 신청 과정 이후 서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일정한 자격 심사 과정을 거쳐서 오류 지급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물론 자동 지급의 전제가 되는 데이터의 품질 개선, 연계 및 활용 인프라 강화를 통해 오류 지급의 여지는 장기적으로 줄어 들 수 있다.

4 나가며

복지급여에서 탈신청주의를 둘러싸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이 글에서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일정한 모형을 상정한 뒤 모형별 기대효과를 비교·분석했다. 이를 위해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전 국민, 복지멤버십 가입자로 나누고, 급여 지급 방식을 자동 안내, 자동 지급으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2×2의 네 가지로 나뉜 모형은 ① 복지멤버십 대상 자동 안내, ② 복지멤버십 대상 자동 지급, ③ 전 국민 자동 안내, ④ 전 국민 자동 지급

으로 제시됐다. 분석 내용을 보면 가장 진보적인 ④ 전 국민 자동 지급 모형은 사각지대 해소와 낙인 효과 제거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서 논점을 남겼다.

이와 같은 분석 내용에 근거하여 네 가지 정책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탈신청주의의 모형과 경로가 다양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요점은 수급자 입장에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탈신청주의 모형과 경로는 단일하지 않다. 탈신청주의와 관련한 토론과 논쟁이 이분법적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극단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탈신청주의 모형과 경로별로 초래할 편익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정책적인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 탈신청주의 논의의 배경에는 ‘신청주의’라는 원칙 혹은 과정이 잠재적인 수급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단계적 제도 개선의 접근이 필요하다. 탈신청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자동 지급 방식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신청주의 원칙과 충돌한다. 모든 급여를 즉각적으로 자동 지급하기보다는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처럼 논란의 여지가 적은 제도부터 우선적으로 신청주의를 완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가 보장하는 공익과 잠재적 수급자의 프라이버시 사이의 법익 균형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수급자의 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전 마련이 필요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통합하여 급여를 자동 지급하는 모형은 사각지대 해소에는 긍정적이거나,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수급자가 '원하지 않는' 자동 개입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 개인 정보 제공 거부 권리나 수급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기술적 자동화가 인간을 의사결정의 객체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

넷째, 제도 간 연계 오류 및 전략적 미신청 집단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전 국민 자동 지급 모형은 기초연금 수급이 오히려 생계급여 탈락이나 급여 삭감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미신청' 집단에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과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데이터 품질에 따른 오류 지급의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데이터의 품질 개선, 연계 및 표준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인력과 재정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 데이터 품질 개선 및 활용도 제고의 전제조건으로 복잡한 제도의 연계 강화 및 정합성 개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㉞

참고문헌

국세청. (n.d.).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lid=238977&mi=40397>
 김기태, 강신욱, 김태완, 노대명, 이현주, 함영진, 김성아, 이원진, 임덕영, 임완섭, 정은희, 오성재, 이다미,

이주미, 최준영. (2025).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윤주. (2023. 11. 1.). 기초연금 소득기준 충족하고도 안 받은 노인 23만 6천명.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14530.html>
 남찬섭. (2025). 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시작된 논의… 진짜 잔인한 것은 따로 있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7660&SRS_CD=0000014360
 노대명. (2025).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제도'라고 말했는데…왜 폐지 안 될까?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65666&SRS_CD=0000014360
 보건복지부. (2025. 1. 2.).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보도자료].
 양승엽. (2025).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위한 지원과 규제** [AI 복지·돌봄 혁신 포럼 토론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희옥. (2021).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보장. **헌법학연구**, 27(1), 33-74.
 정세정, 김기태. (2022). 사회배제를 보는 또 다른 시각: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보건복지포럼**, 306, 77-89.
 後藤玲子. (2017). 福祉における情報の壁. **社会政策**, 9(2), 135-146.

Beyond the Application-Based Approach: Four Models of Automated Welfare Provision

Kim, Ki-tae

Oh, Sungjae

Choi, Jun-yo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issue of moving away from conditioning welfare benefits on formal application can be discussed from a perspective that moves beyond the either-or dichotomy of “the application-based approach vs. automation.” This article takes the view that the transition away from the application-based principle can occur in degrees, as depicted by four scenarios stemming from a two-by-two matrix with a target-group axis (all citizens vs. welfare information subscribers) and a payment-method axis (automatic notification vs. automatic payment). Hence the four models: (1) automatic notification for welfare information subscribers; (2) automatic payment for welfare information subscribers; (3) automatic notification for all citizens; and (4) automatic payment for all citizens. The first scenario, the least progressive, most closely resembles the current system. As each successive scenario is assumed to be more progressive, the fourth is expected to be the least stigmatizing and most effective in reducing gaps in welfare provision. However, it may also be more vulnerable to concerns about self-determination, privacy, and the claw-back of erroneous payments. It may be relatively easier to automate universal benefits and merit goods, but public assistance, being selective and strictly means-tested, requires carefully designed improvement strategies.